

# 평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1. 심사경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 3. 20(월) 평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06. 3. 29(수)
- 다. 상정일자 : 2006. 3. 30(목) 제12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 3. 29) 상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재무과장)

####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물품관리조례에 반영하면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2조)
-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안 제3조)
- 관리사무의 위임 및 기증품의 취득 (안 제4조, 안 제11조)
- 중요 물품의 범위 삭제(안 제11조의2)
- 보관책임 및 일시보관 (안 제20조, 안 제21조) : 물품운용관 추가
- 장부의 작성을 장부의 조제로 용어정리 (안 제25조)
-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삭제(안 제30조)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함경호)

가.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물품관리조례에 반영하면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 나. 주요내용은

- 안 제2조에서 군수는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 물품운용관은 직무를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토록 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관서의 장과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기증품을 취득할 때는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강원도의 기부금품 모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 안 제11조의 2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중요물품 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된 중요 물품의 범위를 삭제하고
- 안 제20조와 안 제21조에서는 보안책임자와 일시보관자에 물품운용관을 추가하였으며
- 안 제25조에서는 장부의 조제를 장부의 작성으로 용어를 정리하고
- 안 제30조에서는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조 조항을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다.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평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평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0
----------	-----

제출년월일 : 2006. 3. 2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에서 분리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물품관리조례에 반영하면서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물품운용관의 직무를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함(안 제3조)

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할 있도록 함 (안 제4조).

1. 제1관서, 기타관서, 읍·면의 소관 물품 : 관서의 장, 읍·면장
2. 의회 소관 물품 : 의회 사무과장

라.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이 기증품을 취득할 때는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도의 기부금품 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안 제11조).

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중요물품은 정수물품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 규정된 중요 물품의 범위를 삭제함 (안 제11조의2)

바. 보관책임자와 일시보관자를 물품운용관을 추가함(안 제20, 21조)

사. 장부의 조제를 장부의 작성으로 용어 정리함(안 제25조)

아. 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조항을 제22조 제3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30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의거 생략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평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물품관리조례를 “평창군 물품관리조례”로 한다.

제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 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제1관서, 기타관서, 읍·면의 소관 물품 : 관서의 장, 읍·면장
2. 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제9조제1항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2조, 제113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제17조제4항중 “영 제96조제2항”를 “영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으로 “청·소장”을 “관서의 장, 읍·면장”으로 하고, 제2항중 “물품출납원은”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해”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을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중 “군수 또는 청·소원의 장”을 각각 “물품관리관”으로 하며, 제4항중 “청·소원의 장이”를 “물품관리관은”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장부의 조제)”를 “(장부의 작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조제”를 “작성”으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제26조 본문중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중 “청소의 장”을 “제1관서, 기타관서의 장”으로 한다.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제1관서를 포함한다)이,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이를 하여야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별표 1 품목구분 기준중 “(1) 비품 ②”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관리책임)①~②(생략)</p> <p><u>&lt;신설&gt;</u></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관리책임)①~②(현행과 같음)</p> <p>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p>
<p>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① (생략)</p> <p><u>&lt;신설&gt;</u></p> <p>②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p>	<p>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①(현행과 같음)</p> <p>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p> <p>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p>
<p>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 또는 출장소의 장에게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p>	<p>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임한다.</p> <p>1. 제1관서, 기타관서, 읍면의 소관 물품 :관서의 장, 읍·면장</p> <p>2. 의회 소관 물품 : 의회 사무과장</p>
<p>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9조(물품매입 요구의 심사) ①-----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보관책임)① 재고품은 <u>물품출납원</u>, 공용품은 <u>물품출납원</u> 또는 <u>분임물품출납원</u>, 전용품은 <u>전용자가</u>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p>	<p>제20조(보관책임)① 재고품은 <u>물품출납원</u> 또는 <u>분임물품출납원</u>이, 공용품은 <u>물품출납원</u>, <u>분임물품출납원</u> 또는 <u>물품운영관이</u>, 전용품은 <u>물품운영관이</u> 지정된 경우 <u>물품운영관의</u> 지도감독을 받아 <u>전용자가</u>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p>
<p>제21조(일시보관) ① <u>물품출납원</u>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u>청·소장의</u>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p> <p>② <u>물품출납원</u>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u>물품수탁서</u>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p>	<p>제21조(일시보관) ① <u>물품출납원</u> 또는 <u>물품운영관</u>-----  <u>관서의장,읍·면장</u>-----  -----  -----  ② <u>제1항의</u> <u>규정에</u> <u>의해</u> -----  -----  -----</p>
<p>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u>분임물품출납원</u> 또는 <u>전용자</u>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u>물품출납원</u>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u>전용자</u>의 보관물품으로서 <u>분임물품출납원</u>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u>분임물품출납원</u>을 경유하여야 한다.</p> <p>② <u>물품출납원</u>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u>군수</u> 또는 <u>청·소원의 장</u>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u>물품출납원</u>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u>군수</u> 또는 <u>청·소원의 장</u>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u>청·소원의 장</u>이 <u>물품출납원</u>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u>군수</u>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 ① <u>물품운영관</u> 또는 <u>분임물품출납원</u>은 -----  -----  -----  -----  -----  ② -----  ----- <u>물품관리관</u> -----  -----  ③ -----  ----- <u>물품관리관</u> -----  -----  ④ <u>물품관리관</u>은 -----  -----  -----</p>
<p>제25조(<u>장부의</u> <u>조제</u>)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u>조제</u>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p>	<p>제25조(<u>장부의</u> <u>작성</u>)①-----  ----- <u>작성</u> -----  -----  -----</p>

현 행	개 정 안
<신설>	② 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u>같음한다.</u>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u>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u>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u>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u> ----- -----.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u>물품출납원의 장부</u> 검사는 <u>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청소를 포함)이, 기타 청,소의 경우에는 청,소의 장이 이를 하여야 한다.</u>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u>물품관리에 관한 검사</u> 는 <u>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청소를 포함한다.)이,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이를 하여야 한다.</u>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u>군수 또는 청·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u>	②----- 제1관서, <u>기타관서의 장</u> ----- -----.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u>물품출납원은 그 소관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재무과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u>	<삭제>
[별표 1] 품종구분 기준 (1) 비품 ① (생략) <u>②내용년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u> ③ (생략)	[별표 1] 품종구분 기준 (1) 비품 ① (현행과 같음) <u>&lt;삭제&gt;</u> ③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잡종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 또는 분할측량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58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기간, 대체성 및 소모감모율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90조(검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행하되, 정기검사는 매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경우에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물품관리행위가 적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현품 및 표준서식에 의하여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로 하여금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